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호 병설 가능한 학교에 특수학교 포함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78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래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7.
3. 회부연월일 : 2024. 10.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並設)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의 병설) <u>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u> 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並設)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병설)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u> ----- -----.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 >

연도	학생수(명)			특수학교 수(교)	특수학교 학급수(개)
	전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2014	87,278	25,827(29.6%)	61,451(70.4%)	166	4,396
2015	88,067	26,094(29.6%)	61,973(70.4%)	167	4,454
2016	87,950	25,961(29.5%)	71,989(70.5%)	170	4,550
2020	95,420	26,615(27.9%)	68,805(72.1%)	182	4,968
2021	98,154	27,288(27.8%)	70,866(72.2%)	187	5,114
2022	103,695	28,233(27.2%)	75,462(72.8%)	192	5,255
2023	109,703	29,236(26.7%)	80,467(73.3%)	194	5,443
2024	115,610	30,390(26.3%)	85,220(73.7%)	195	5,58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만 7,278명이었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4년 11만 5,610명으로 2만 8,332명(32.5%) 증가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2014년 2만 5,827명에서 2024년 3만 39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29.6%에서 26.3%로 낮아짐. 그 외에 8만 5,220명(73.7%)의 특수교육대상자(2024년 기준)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비해 특수학교의 수는 2014년 166교에서 2024년 195교로 29교(17.5%)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특수학교의 학급 수는 2014년 4,396개에서 2024년 5,582개로 1,186개(27.0%)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증가 속도(32.5%)에는 미치지 못함.

개정안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급증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아울러,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학 학생 중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 학생은 2023년 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¹⁾,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설립을 확대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통학 거리 문제 또한 함께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1) (2019년) 7.0%→(2020년) 7.0%→(2021년) 8.0%→(2022년) 6.6%→(2023년) 8.2%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 제 29950호)에 따라 일반학교 설립에 비해 더욱 엄격한 교지 기준면적이 적용되며 그 외에도 교육 관련 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²⁾. 개정안과 같이 병설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교적 특수학교의 설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를 때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의 수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의 수는 적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에 배치되고 있는데,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특수학교 배치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합교육 기회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진학교, 강서구 서진학교 등 참고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 충족 및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학생 간의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통합교육 확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권고³⁾가 다수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에서 병설 특수학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당 설치 가능한 특수학급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별 병설 가능 학교급과 병설학교의 최소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병설 특수학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⁴⁾.

3) UN 권고 총 4회('11년 1회, '14년 2회, '22년 1회), 국가인권위 권고 2회('15년, '16년 각 1회)

4) 교육부 제출 수정안 예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並設)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병설) ----- ----- -----,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로, 병설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⁵⁾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⁶⁾ 등에 따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임.

○ 시도교육청 의견 :

- (전북: 신중검토) 인구 감소에 따른 일반학교 내 유휴교실의 증가, 통합교육 지향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 설립보다는 특수학급 증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대구: 이견없음)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장애학생의 취학유예 및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견 없음.

○ 관련단체 의견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신중검토) '학교 내 학교' 방식으로 물리적 통합을 이루면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교의 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병설로 별도의 건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으로 설치).

문 의 처

02)6788-5186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